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재봉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30

발의연월일: 2024. 12. 5.

발 의 자: 송재봉·서왕진·이용선

김남근 • 전진숙 • 이용우

박정현 • 이광희 • 차규근

박홍근 • 박주민 • 김우영

이수진 · 차지호 · 이연희

남인순・김 윤・이강일

천준호 · 김동아 · 허성무
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,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함.

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려는 것임(안

제59조의4제8항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8항 중 "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"로, "100분의 10"을 "100분의 20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 ~	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 ~		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		
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<u>2024년</u>	⑧ <u>2025년</u>		
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	<u>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</u>		
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			
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			
득산출세액(필요경비에 산입한			
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			
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)			
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			
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			
은 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			
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			
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			
금을 뺀 금액이 3천만원을 초			
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			
서는 <u>100분의 10</u> 에 해당하는	<u>100분의 20</u>		
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.	<u>.</u>		
⑨ ~ ⑪ (생 략)	⑨ ~ ① (현행과 같음)		